

# 공증 절차상의 신분증명서에 관하여

이 석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공증담당변호사

## I. 들어가는 말

### 1. 공증 절차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통상 신분증명서 또는 신분증(identity document, ID)이라 함은 개인의 신상 또는 신원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하지만 금전거래 등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등의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증 절차에서는 촉탁인<sup>1)</sup>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그 성명과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수적이다.

### 2. 신분증명서의 유효 요건

1) 공증 실무에서 공증 보조자나 촉탁인이 공무원증을 가지고도 공증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 공증인이 공증 절차에서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은 인증서나 공정증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증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공증인이 촉탁인 등에 대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허위 내용의 공증을 하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여지가 발생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통상 공증을 청구하는 사람을 ‘촉탁인’이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공증인에게 공증을 촉탁하는 사람을 촉탁인이라고 지칭한다. 이하에서는 촉탁인의 대리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촉탁인 등’이라고 함축해서 표현하기로 한다.

- 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 등록증, 공무원증, 전역증, 사원증 및 학생증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만 공증 절차상의 신분증명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 나. 공증 절차에서 사용되는 촉탁인 등의 신분증명서는 증명서 원본이어야 한다. 따라서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스캔 파일로 구성된 증명서 이미지는 그 신분증명서라 할 수 없다.
- 다. 공증인법 소정의 신분증명서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라야 한다. 따라서 학생증과 사원증의 발급기관인 학교장과 법인은 공증인법 제27조에 의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생증과 사원증은 공증인법상의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없다.
- 라. 공증 절차상 신원확인에는 보통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게 하지만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얼굴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여기서 ‘첨부(添附)’란 사진을 붙이고 철인을 누르는 첩부(貼付)한 경우뿐만 아니라 얼굴 사진을 스캔하여 붙인 경우를 포함하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등은 얼굴 사진이 없어서 공증 절차상의 신분증명서가 될 수 없다.<sup>2)</sup>
- 마.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및 청소년증 등과 같이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바. 이하에서는 공증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관련한 공증인법의 규정과 내국인, 외국인, 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신분증명서 및 추완 증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II. 공증인법상 신분증명서

### 1. 공증인의 본인 확인 의무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부여하려면 촉탁인 등의 신원<sup>3)</sup>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44쪽 참조.

3) 국어사전적 의미의 ‘신원’은 주소, 본적, 신분, 직업, 품행 따위의 개인이 자라온 과정과 관련되는 자료를 뜻하지만, 공증 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원’은 공증인이 공증 절차에서 촉탁인 등의 이름과 얼굴 등을 인식하여 촉탁인 등과 타인을 구별하는 신분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제59조). 공증인이 촉탁인 등에 대한 면식이 없으면 촉탁인 등이 스스로 ‘자신이 그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 증명의 책임은 촉탁인 등 본인에게 있고, 공증인이 직권으로 그 사실을 탐지하여 촉탁인 등을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sup>4)</sup>

그러나 공증인이 촉탁인이 제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약속어음 공증을 작성해준 사건에서 공증인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여 공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sup>5)</sup>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 신분 확인 관련 규정

공증인이 촉탁인 등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 등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등이 외국인이면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 등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재외공관 공증법 제13조).

- ①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sup>6)</sup>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 ②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 ③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 3. 신원 증명 증인<sup>7)</sup>

촉탁인 등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는 신분증명서가 없더라도 공증인이 면식이 있는 증인 즉, 신원 증명 증인 2명으로 하여금 촉탁인 등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sup>8)</sup>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

4)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44쪽 참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 참조.

6)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려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핵심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해 신분증명서의 작성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참고로 2023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7)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44쪽 참조.

하는 확실한 방법을 허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휴대한 증인 2명의 확인에 의하여 그 사람이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으며, 공증인이 면식이 있는 증인 1명과 증명서를 휴대한 증인 1명(신원 증명 증인)의 확인에 의하여도 촉탁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9)</sup>

#### 4. 면식<sup>10)</sup>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부여하려면 촉탁인 등의 성명과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촉탁인 등에 대한 면식이 있어야 한다. 공증 실무상 면식이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지 촉탁인의 성명만 알거나 얼굴만 아는 정도로는 면식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실무상 면식부가 작성되어야만 면식이 있는 것으로 된다. 면식부에는 면식의 경위로서 촉탁인을 알게 된 동기 또는 촉탁인과 공증인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면식부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면식부에 그 날짜와 증서(등부)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1호서식 참조)<sup>11)</sup>.

### Ⅲ. 내국인 신분증명서

#### 1. 주민등록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sup>12)</sup>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8) 동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참조.

9)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45쪽 참조.

10)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44쪽 참조.

11) 공증인법 제35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2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각 참조.

12) 주민등록법 제24조 참조.

하여야 한다.<sup>13)</sup> 이 경우 통상 유효기간이 30일 정도이므로 그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촉탁인의 신분증명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그 청소년증에는 성명, 사진, 주소, 발급일, 유효기한 등을 수록해야 한다.<sup>14)</sup> 따라서 청소년증<sup>15)</sup>도 공증인법 소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운전면허증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정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외 운전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sup>16)</sup> 그 유효기간[적성검사(갱신)기간, 1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신분증명서에 해당한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신청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임시 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20일)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sup>17)</sup> 이 경우에는 임시 운전 증명서가 촉탁인의 신분증으로 활용된다.

한편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참조.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6조 각 참조.

15) 청소년증의 이미지 견본은 아래와 같다.



16) 도로교통법 제85조, 제98조 참조.

17) 도로교통법 제91조 참조.

운전면허증(전자신분증, 유효기간 3년) 등을 발행하여 개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 확인용 증명서로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증 절차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무부의 신분증 운용 지침 등이 없어서 현재 대한공증인협회 차원에서 그 시행이 잠정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8)</sup>

#### 4. 여권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며,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여권에는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등을 기재해야 한다.<sup>19)</sup>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즉,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여행증명서는 위 여권과 1년간 동일한 효력이 있다.<sup>20)</sup> 이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도 촉탁인의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5.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정 소정의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줘야 하고, 그 등록증(복지카드)에는 성명, 사진, 주소, 장애등급, 등록일, 발행일, 유효기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sup>21)</sup> 따라서 장애인 복지카드도 공증인법 소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해당한다.<sup>22)</sup>

#### 6. 공무원증

사진이 붙어 있는 공무원증<sup>23)</sup>은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신분증명서라 할 것이나, 통상

18) 대한공증인협회 밴드, 2022. 3. 31. 질의회신 참조.

19) 여권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각 참조.

20) 여권법 제14조 참조.

2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 참조.

22) 대한공증인협회 밴드, 2021. 3. 16. 질의회신 참조.

23) 공무원증의 이미지 견본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가 채무자로서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려면 증서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촉탁인에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을 함께 제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sup>24)</sup>

## 7. 국가유공자등록증(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국가유공자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고, 그 국가유공자 등록(유족)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대상, 발행일, 보훈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sup>25)</sup>.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신분증명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sup>26)</sup>

## 8.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 면허 시험(자동차운전면허취득, 해당분야 기술 자격의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자)에 통과한 자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해줘야 하고, 그 면허증에는 성명, 사진, 주소, 발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sup>27)</sup>



24) 대한공증인협회 밴드, 2021. 12. 7. 질의회신, 민사집행규칙 제20조 각 참조.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참조.

26) 대한공증인협회 밴드 2021. 9. 24. 질의회신 참조.

따라서 시장 등이 발행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sup>28)</sup>도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신분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sup>29)</sup>

### 9. 전역증(병역증)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 부대장은 전역하는 부대원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sup>30)</sup>. 그 병역증과 전역증에는 성명, 사진, 전역일, 발행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진이 붙어 있는 지방병무청장 등이 발행한 전역증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7조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로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sup>31)</sup>

사진이 붙어 있는 전역증은 공증인법 제7조 소정의 신분증명서라 할 것이나, 통상 전역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가 채무자로서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려면 증서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촉탁인에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을 함께 제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10.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포함)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sup>32)</sup>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 면허증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7)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각 참조.

28)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에 대한 이미지 견본은 아래와 같다.



29) 대한공증인협회 밴드, 2021. 2. 4. 질의회신 참조.

30) 병역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각 참조.

31) 대한공증인협회 밴드 2021. 4. 15. 질의회신 참조.



발행되는 것으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의사 면허증도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신분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11.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소정의 지원 대상자 등에게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sup>32)</sup>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와 한부모가족증명서에는 대상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증인법 제27조에 따른 신분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2. 법무사·변호사의 신분증과 그 사무원증

법무사 또는 변호사 신분증이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및 그 등록증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원증은 모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아닌 대한법무사협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신분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Ⅳ. 외국인 신분증명서

## 1. 여권·국내 주재 외국 영사 발행의 신원 확인서(임시 여권)

공증인이 자신과 면식이 없는 외국인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본국 여권<sup>34)</sup>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촉탁인 등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임시 여권)로써 촉탁인 등임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

## 2.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등

32) 의료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각 참조.

3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참조.

34) 외국인 여권의 이미지 견본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도 국내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소지할 수가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sup>35)</sup>,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영주증<sup>36)37)</sup> (유효기간 10년), 재외국민<sup>38)</sup>(외국 국적 동포<sup>39)</sup>) 국내거소 신고증<sup>40)41)</sup>,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등도 외국 국적 촉탁인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3. 기타<sup>42)</sup>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 35)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1항 참조.
- 36)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3조의2 각 참조.
- 37)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의 각 이미지 견본은 아래와 같다.



- 3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 3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외국국적동포’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하는 자를 의미하고, 동법과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재외동포’의 의미는 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총괄한다.
- 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 41)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의 이미지 견본은 아래와 같다.

말하므로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서(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는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의 증명서가 아니다. 다만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여권은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촉탁인 등의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행정기관장 명의로 작성된 인감증명서는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sup>43)</sup>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V. 법인의 신분증명서<sup>44)</sup>

### 1. 의의

법인이나 단체는 자연인과 달리, 그 본질상 얼굴이 없으므로 법인 등의 대표자 자격으로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 자신이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배인은 법인 대표자의 경우처럼 특별히 공증에 관한 법인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영업에 관한 한, 그 영업주(법인)에 같음하여 공증을 촉탁할 수가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지배인의 신분증으로 지배인임을 증명하면 족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2. 법인의 신원(법인격, 권리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42)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45쪽 참조.

4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3031 청구이의 판결 참조.

44)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25쪽 내지 26쪽 각 참조.

법인의 대표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이나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된 것도 허용되나, 반드시 '제출용'이라는 기재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또한 지점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대표자를 확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 이사 변경의 경우 고의 또는 부주의로 본점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지점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종전의 대표이사가 여전히 대표이사인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국의 법인도 공증을 촉탁할 수가 있다. 외국 법인의 대표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경우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존재와 대표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그 영업소에 관하여는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되, 등기사항은 회사설립의 준거법, 국내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 국내에 설립되는 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사항이 등기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서류로서 공문서나 공정증서는 아포스티유<sup>45)</sup> 또는 본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Ⅶ. 신분증명서의 추완<sup>46)</sup>(급박한 사유)

촉탁인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증인법 제 27조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sup>47)</sup> 즉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촉탁인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만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신원의 증명 없이 이 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3일 이내'라 함은 민법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금요일에 증서를 작성하였으면 월요일에는 추완 증서가 작성되어야

45) 1961년 헤이그에서 외국 공문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른바 100여 개 국가 간에 체결된 아포스티유 협약이 성립되었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여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46) 공증 실무상에서는 공증인 등이 그 추완 증서 제도에 관한 깊은 인식이 매우 낮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47) 공증인법 제27조 제4항, 제59조 각 참조.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수요일까지 연장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sup>48)</sup> 신원 증명에 관한 추완 증서의 문례(文例)<sup>49)</sup>는 아래와 같다.

(제22호서식)

증서 0000년 제 000호

**촉탁인 증명에 관한 추완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0000년 00월 00일 촉탁인 갑(甲), 촉탁인 을(乙)의 촉탁에 의하여 2023년 증서 제000호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본 공증인이 촉탁인 갑(甲)의 성명이나 얼굴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하므로 '3일 이내에 촉탁인 갑(甲)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추완 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으로 위 증서를 작성하였던 바, 그 증서 작성일로부터 3일이 지나지 않은 0000년 00월 00일 촉탁인 갑(甲)이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촉탁인 본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종전에 작성된 증서를 인정한다고 진술 하므로 이를 청취하고 그 취지를 적어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촉탁인 갑(甲)은 위 증서의 촉탁인 본인이 맞으며, 위 증서를 인정한다.

(제32호서식)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본 공증인은 촉탁인 갑(甲)에게 2023년 제000호 공정증서와 본 증서를 열람하게 하였는 바, 이에 촉탁인 갑(甲)이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므로, 아래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촉탁인 갑(甲)    -- 서명날인    -- (인)<sup>50)</sup>

이 증서는 0000년 00월 00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같은 날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을 작성하여 그에게 교부한바, 그가 이를 수령하였다.

48)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186쪽 참조.

49) 개정판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년, 187쪽 참조.

50)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추완 증서는 본인임이 판명되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이러한 신분증명서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할 여유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작성해야 하므로 추완 증서의 작성 촉탁인이 이전 공정증서의 작성 당시 본인 확인을 마친 촉탁인까지 모두가 참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정식, 공증인법 개설(공증·인증의 실무), 삼화문화사 2017년, 162쪽 내지 163쪽 각 참조.


## Ⅶ. 전자공증(화상공증)의 신분 확인

전자공증은 정보 내용의 변조나 소실에 대하여 정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sup>51)</sup> 공증인과의 대면 절차가 없이 진행되는 전자 공증에서 그 촉탁인의 신원확인도 공증인이 촉탁인의 신분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촉탁인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신분증명서를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상의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Ⅷ. 나가는 말

본고는 공증인, 공증 보조자가 공증 실무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촉탁인 등에 대한 신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맥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공증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법적 신뢰를 축적하고자 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촉탁인 등의 신분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증 절차에 통용되는 신분증명서로는 촉탁인 등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임시 운전증명서), 여권(여행증명서),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공무원증(증서 작성 시에만 주민등록 등·초본 병행 확인), 국가유공자등록증(국가유공자유족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전역증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한부모가족증명서, 사진이 첨부된 법무사, 변호사의 신분증 및 그 사무직원증 기타 전문직 자격등록증 등은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신분증명서가 아니므로 공증 업무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촉탁인 등의 본국 여권, 대한민국에 주재한 본국 영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국내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은 그 발행기관이 공증인법 제27조 소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신분증명서로 사용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51)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신뢰(통권 제2호), 2009년, 12쪽 참조.